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90일
신청인	명칭		
	소재지		
	대표자		

「약사법」 제83조의2, 「약사법 시행령」 제34조의3제2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10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.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·시설·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.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.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